

##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제2회 이사회(정기) 회의록

1. 일 시 : 2020년 2월 24일(월) 오후6시~

2. 장 소 :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작은자리복지관 3층 창조홀)

### 3. 출석현황

가. 출석 이사 성명 : 신명자, 신명호, 정원오, 최정은, 최종덕, 이순남

이사 정원 : 8인

나. 기타 참석자(감사) : 황경상

### 4. 의결 및 심의안건

의안번호	안건 명	표결 수				심의결과
		찬성	반대	기권	무효	
제1호	감사보고	6	0			채택
제2호	법인 외부추천이사 선임	5	0			원안 가결
제3호	법인 정관 개정	6	0			원안 가결
제4호	법인 운영규정 개정	6	0			원안 가결
제5호	2019년 법인 및 산하기관 사업 및 결산보고 심의	6	0			원안 가결
제6호	2020년 법인 및 산하기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6	0			원안 가결
기타 안건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좋은세상지역아동센터 시설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의 건	6	0			원안 가결

### 5. 안건 심의내용

#### ○ 제1호 안건 승인

- 2020년 2월17일-18일 양일간 진행된 복음자리 법인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황경상 감사로부터 보고받고, 최정은 이사가 감사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고 이순남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의결하다.

#### ○ 제2호 안건 심의

- 외부추천이사 1인의 임기만료(3월25일)에 따라 2020년 2월19일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부터 정원오 후보자, 권현미 후보자, 이호훈 후보자를 추천받고, 당사자인 정원오이사를 제외한 다섯명 이사 전원이 정원오후보자를 표결로 선임하다.

<취임한 이사>

외부추천이사 정원오(1965년 3월 3일생)

취임년월일 2020년 3월 26일

취임된 사람은 즉석에서 그 직에 취임함을 승낙하였다.

성명	선임기간	소속 / 직책
정원오	2020. 3. 26 ~ 2023. 3. 25	성공회대학교 교수

○ 제3호 안건 심의

-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정관에 대한 제13차 개정안을 첨부한 자료를 검토하여 심의함.  
 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표준정관에 근거하여 정관을 개정함.  
 신명호 이사의 동의와 정원오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의결하다.

<주요개정내용>

당초		변경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제3조	시흥시 신천동 91-4	제3조	시흥시 시흥대로 1087(신천동)
제4조 (사업의 종류)	1. 각종 사회복지기관 설치운영 및 육성지도 2. 사회복지기관 위수탁운영 및 지역사회복지사업 참여 3. 직업훈련시설 및 취업알선 기관 설치운영 4. 청소년 가정 및 저소득 근로자 후원 5. 노동자를 위한 교육활동과 취업알선 6. 기타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목적 사업의 종류)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34조의 5에 의한 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2.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의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3.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의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4. 「노인복지법」 제38조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5. 「아동복지법」 제50조, 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운영 6.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7. 「출입국관리법」 제39조의 외국인지원사업 8. 지역사회교육훈련사업 9. 기타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 (회계의 구분 등)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8조 (회계의 구분 등)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 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장이 매 회계년도 개시전 1월 이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개시 전 5일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년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이사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매회계년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이사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8인(이사장과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사장 1인 2. 이사 8인(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제16조	① 이 법인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6조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은